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107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072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107461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고B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금전증여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의 각 항 기재 증여를

최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8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2014. 1. 27. 2억 원, 2014. 2. 3. 5,000만 원, 2014. 2. 19.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변제기 2014. 12. 9.1),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의 대표자인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4. 9. 1.부터 2015. 9. 23.까지 그 명의의 계좌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목록의 '년도, 거래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액수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송금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합계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합계 상당액인 205,8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용카드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에 관한 이자 내지 원금의 변제 명목 또는 피고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명목으로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C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년부터 C과 피고를 상대로 수많은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때부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C 및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자체를 알았다거나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자체 및 이 사건 송금행위가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 및 당시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만을 두고서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금원이체내역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원 중에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증여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이라고 보기에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액수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2015. 6. 23.자 9,500원, 2015. 6. 25.자 19,500원 등), ③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 및 도중에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이체되었는바(2014. 4. 8.자 5,000,000원, 2014. 4. 17.자 10,000,000원, 2014. 5. 2.자 2,000,000원, 2014. 10. 8.자 5,000,000원, 2014. 11. 6.자 5,000,000원 등),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터잡은 것이라는 전제와 위와 같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의 이체내역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실질적 채무자가 E 또는 C인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특정 채무자에 관한 변제 명목의 돈이었다면 특정 채무자에 대한 변제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C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에 터잡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태규

판사박소연

판사신재호

별지

1) 2014. 2.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가 2013.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12. 9.'의 오기로 판단된다.